충청남도 공고 제2018 - 1192호

「2018년 금속산업대전」 참가기업 모집 공고

「2018년 금속산업대전(KOREA METAL WEEK 2018)」가 10.30.(화)부터 11.2.(금) 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. 우리 도에서는 同 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ㆍ지원할 계획이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18. 8. 충청남도지사

I 전 시 회 개 요

명 칭	금속산업대전 2018(KOREA METAL WEEK 2018)
개최기간	2018. 10. 30.(화) ~ 11. 02.(금) / 4일간
장 소	킨텍스 제1전시장 2, 3홀
모집품목	파스너&와이어, 주조&다이캐스팅, 자동차 및 기계부품, 뿌리 산업전, 프레스&단조, 튜브&파이프, 금속 도금&도장, 3D기술, 알루미늄, 레이져 및 용접, 펌프 기술, 공구, 컴포짓
모집규모	6개사
신청기간	2018. 9. 7.(금)까지

Ⅱ 지 원 내 역

충청남도 지원내역	참가업체 부담
기본부스 임차료 중 일부 지원 (업체당 200만원 한도, VAT포함)	충청남도 지원 이외 사항

※ 부스배정은 선정평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우선배정 예정

- ㅇ 신청기업의 특허, 인증, 우수기업 우대현황 등 종합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
- ㅇ 선정기업은 개별통보 예정 ※ 동점 시 접수 순으로 선정

Ⅲ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신청 방법		2018년 9월 7일(금) 18:00까지 충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(www.cntrade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※ www.cntrad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수출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및 신청 → 해당사업명 클릭 → 신청 버튼
충남도	제출 서류 (필수)	① 참가신청서, 품목설명서, 참가각서(도장날인) [서식 1, 2, 3]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 [서식 4] ③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사본(없을 시 사유기재), 최근3년(2015~2017) 수출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※ 증빙자료(사본)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
	해당 사항 제출	① 보유증서 및 우수기업 우대자료 [서식 5] ⑤ 제품 카달로그(외국어) ⑥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(동일지역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) ※ 증빙자료(사본)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
선정	기준	전시박람회 선정기준표에 따라 충청남도 및 충남경제진흥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(고득점) 순으로 선정

IV 신청관련 문의

담당자	연 락 처	주 소	비고
경제진흥원	전 화: 041-539-4531	(31450) 충남 이산시 염치읍	문의
마케팅지원팀	팩 스: 041-539-4509	은행나무길 223	
이 원 부	이메일: wonboo9707@cepa.or.kr	마케팅지원팀	
충청남도	전 화: 041-635-3362	(32255) 충남 홍성군 홍북면	
기업통상교류과	팩 스: 041-635-3041	충남대로 21 충남도청	
고 예 슬	이메일: tmfdl626@korea.kr	기업통상교류과	

♡ 신 청 자 격

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기업으로, 충청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※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제출 必

Ⅵ 유 **의 사 항**

- o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, 신청 전에 미리 품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,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에는 1년 ~ 3년 동안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 - ☞ 1.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: 사업비 집행 전 1년 / 사업비 집행 후 2년
 - 2. 허위서류 제출,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해외마케팅사업 방해 행위 : 3년
 - 3. 사회적 책임(민원발생, 환경피해, 체납, 위생불량 등)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는 선정시 배제 될 수 있음
- 지원 받은 기업은 박람회 참가 후 1년 동안 충남도 및 충남경제진흥원에 상담진척
 (계약사항, 수출사항 등)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
 수출 지원시책 사업 참가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우리도가 추진하는 3개 사업(무역사절단, 해외전시회 단체·개별)에 대하여 기업별 참가횟수가 총량관리 되며 (연 8회 범위내 1~2회 자율조정), 해외전시회 단체참기는 업체별로 연4회(최대 6회)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연간 참가횟수 제한 사업: 무역사절단(4회+2), 해외전시회 단체(4회+2), 개별(2회+1)